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3-11-16

서 울 행 정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구단76562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1. A
	2. B
	3. C
	4. D
	5. E
	6. F
	7. G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피 고	○○○○시 ○○구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변 론 종 결	2022. 9. 30.
판 결 선 고	2022. 10. 28.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3-11-16

청 구 취 지

피고가 ① 2021. 4. 9. 원고 A에게 한 취득세 1,916,530원, 지방교육세 164,270원, 농어촌특별세 109,510원, 가산세 433,660원의 부과처분을, ② 2021. 4. 9. 원고 B, C에게 한 취득세 1,280,120원, 지방교육세 109,720원, 농어촌특별세 73,150원, 가산세 286,660원의 각 부과처분을, ③ 2021. 4. 28. 원고 F, D, G, E에게 한 취득세 4,469,460원, 지방교육세 383,090원, 농어촌특별세 255,390원, 가산세 1,011,36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D, E, F, G은 망 H(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자녀들이고, 원고 A, B, C은 피상속인의 딸인 망 I(2015. 9. 28. 사망)의 배우자 및 자녀들이며, J은 피상속인의 아들인 망 K(1996. 12. 23. 사망)의 배우자이다.

나. 피상속인은 2017. 8. 23. 사망하였고, 피상속인의 소유이던 ○○ ○○구 L 대 794.3㎡ 중 3/13 지분(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18. 3. 2. 서울중앙지방법원 접수 제37270호로 '2017. 8. 23.자 상속'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공동상속인들인 원고들 및 J 앞으로 각 법정상속분(원고 D, E, F, G 및 J은 각 1/6 지분, 원고 A은 3/42 지분, 원고 B, C은 각 2/42 지분)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상속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다. 이후 원고들은 2018. 6. 5. J을 상대로 서울가정법원 2018느합1220호로 상속재산분할 심판(이하 '관련 상속재산분할 사건'이라 한다)을 청구하였고, 위 사건에서 2020. 10. 6.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원고 A이 3/35지분, 원고 B, C이 각 2/35 지분, 원고 F,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3-11-16

D, G, E이 각 1/5 지분의 각 비율로 공유하는 것으로 분할하고, 원고들이 연대하여 J에게 1,592,151,070원을 2020. 11. 30.까지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조정결정'이라 한다)이 내려졌으며, 그 무렵 위 결정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이에 원고들은 2021. 1. 8. 서울지방법원에 이 사건 상속등기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등기원인과 지분을 경정해 달라는 내용으로 소유권경정등기 신청을 하였고, 2021. 1. 8. 서울중앙지방법원 접수 제3599호로 소유권경정등기(이하 '이 사건 경정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2018. 3. 2. 접수 제37270호 소유권이전등기 (등기원인: 2017. 8. 23.자 상속)		2021. 1. 8. 접수 제3599호 소유권경정등기 (등기원인: 2020. 10. 6.자 조정분할)	
F	315 / 8190 지분	F	21 / 455 지분
A	135 /8190 지분	A	9 / 455 지분
B	90 / 8190 지분	B	6 / 455 지분
C	90 / 8190 지분	C	6 / 455 지분
D	315 / 8190 지분	D	21 / 455 지분
G	315 / 8190 지분	G	21 / 455 지분
E	315 / 8190 지분	E	21 / 455 지분
J	315 / 8190 지분		

마. 한편, 피고는 원고들이 이 사건 조정결정에 의해 이 사건 토지 중 당초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된 6.11㎡은 이 사건 상속등기 이후 조정분할에 의해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보고, 2021. 2. 5. 원고들에게 각 취득세 등 합계 총 6,079,710원[1]의 지방세 과세예고 통지를 하였다.

1) 다만, 대습상속인들인 원고 A, B, C은 해당 과세예고 금액인 6,079,710원을 다시 법정상속분에 상응한 각 비율(각 3/7, 2/7, 2/7 지분)로 나누어 통지를 받았다.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3-11-16

바. 이에 원고들은 2021. 2. 25. ○○○○시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시장은 2021. 4. 5. 불채택결정을 하였다.

사. 이후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청구취지 기재 일시에 아래와 같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원고별 과세금액	F, D, G, E	A	B, C
취득세	4,469,460	1,916,530	1,280,120
지방교육세	383,090	164,270	109,720
농어촌특별세	255,390	109,510	73,150
가산세(무신고/)	893,890	383,300	256,020
가산세(납부불성실)	117,470	50,360	33,640
납부할 세액	6,119,300	2,623,970	1,752,650

아.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1. 5. 7. 조세심판원에 각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2. 6. 21. 심판청구가 모두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법정상속분에 따른 상속등기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상속인들 사이에 상속재산분할에 관한 다툼이 있어 상속분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라면 이를 구 지방세법(2018. 12. 31. 법률 제16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13항에서 정한 '상속개시 후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된 경우'로 볼 수 없다. 원고들은 이 사건 경정등기를 마치기 전 법정상속분에 따른 이 사건 상속등기를 마치긴 하였으나 원고들이 이 사건 상속등기를 마칠 당시에는 J의 비협조로 상속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3-11-16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였다. 따라서 이 사건 경정등기로 인하여 비로소 상속재산이 최초로 분할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경정등기로 상속재산이 재분할된 것으로 보아 원고들에게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공동상속인 상호간에 상속재산에 관하여 협의분할이 이루어짐으로써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고유의 상속분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게 되었다고 하여도 이는 상속개시 당시에 소급하여 피상속인으로부터 승계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고 다른 공동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지방세법 제7조 제13항은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하 '등기 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재분할한 결과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가액은 그 재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된 후 상속인들 사이의 별도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재분할하는 경우에 적용된다(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1두441 판결 참조).

2)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상속등기를 경료하게 된 경위 및 그 전후의 사정 등 앞서 든 각 증거와 갑 제1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3-11-16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속등기는 지방세법 제7조 제13항에서 정한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된 경우'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가 이와 같은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이 사건에서 원고들과 J은 이 사건 상속등기를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마쳤다. 원고들은 J과의 상속재산분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원고들이 일방적으로 이 사건 상속등기를 신청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상속등기 신청 당시 제출된 서류에 원고들 이외에 J 본인 명의의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초본(각 발급일 2018. 2. 18.)도 첨부되어 있음이 확인되는바, 위 서류들이 J 본인 또는 본인의 위임에 의해서가 아니면 타인이 발급받을 수 없는 서류인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속등기는 J 본인의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달리 이 사건 상속등기가 J을 배제한 채 원고들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나) 설령 원고들이 이 사건 상속등기를 마친 목적이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상속세 신고·납부 지연으로 인한 가산세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들과 J 사이의 합의의 내용은 '법정상속분 비율로 상속등기'를 하는 것이다. 원고들과 J이 그와 같은 합의에 기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법정상속분에 따른 이 사건 상속등기를 마쳤다면 원고들과 J은 이로써 이 사건 토지를 법정상속분대로 '취득'한 것이고, 그 이후 관련 상속재산분할 사건에서 조정이 성립되어 상속분이 달라졌다면 당초 상속분보다 증가된 상속분에 대해서는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봄으로써 그에 따른 취득세를 부담하는 것이 취득세의 본질에도 부합한다.

다) 한편 이 사건 상속등기가 마쳐진 이후에 원고들이 2018. 6. 5. J을 상대로 상속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3-11-16

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한 사실은 인정된다. 설령 원고들과 J이 가산세 불이익의 부담을 피하기 위하여 일단 법정상속분 비율대로 이 사건 상속등기를 마치고 이후에 상속재산 분할 심판을 통하여 다시 상속분을 조정하기로 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이 사건 상속등기 자체가 원고들 및 J의 합의에 의하여 이루어진 이상, 이 사건 상속등기는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재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원고들 및 J의 의사에 기한 것으로서 실질적 의미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앞서 인정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상속등기 신청 당시 원고들과 J 사이에 존재하였던 법정상속분 비율로 상속재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합의 자체가 소급하여 소멸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라) 구 지방세법 제20조 제1항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9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지방세법 제7조 제13항은 본문에서 상속재산 재분할에 따른 증여의제를, 같은 항 단서는 상속재산 재분할에 따른 증여의제의 예외를 열거하고 있는데, 제1호는 '제20조에 따른 신고·납부기한 내에 재분할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 제2호는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의한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상속인 및 상속재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 제3호는 '민법 제404조에 따른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에 의하여 공동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대로 등기 등이 된 상속재산을 상속인사이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재분할하는 경우'를 예외사유로 정하고 있다.

상속재산의 분할은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그 분할방법의 지정이나 분할금지 등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3-11-16

을 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한 언제든지 공동상속인 사이의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는바, 원고들 주장처럼 법정상속분에 따른 이 사건 상속등기가 상속인들 사이의 잠정적인 법률관계에 불과한 것으로서 구 지방세법 제7조 제13항 소정의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게 되면 구 지방세법 제7조 제13항 단서에서 열거하고 있는 상속재산의 재분할에 따른 증여의제의 예외사유들은 사실상 그 의미를 상실하게 된다.

3.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3-11-16

관 계 법 령

■ 구 지방세법(2018. 12. 31. 법률 제16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⑦ 상속(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한 유증 및 포괄유증과 신탁재산의 상속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과 제3장에서 같다)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취득물건(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취득물건을 말한다)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상속인의 납부의무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44조 제1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⑬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등록·명의개서(名義改書) 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등이 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재분할한 결과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가액은 그 재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20조에 따른 신고·납부기한 내에 재분할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
2.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의한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상속인 및 상속재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
3. 「민법」 제404조에 따른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에 의하여 공동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대로 등기등이 된 상속재산을 상속인 사이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재분할하는 경우

제20조(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기 전에 거래대금을 완납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나 허가구역의 지정 해제일 또는 축소일을 말한다)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3-11-16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③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으로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분할한 결과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은 그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와 당초 상속재산의 분할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끝.